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9.

발 의 자 : 임미애 · 이용우 · 안도걸
박용갑 · 이병진 · 이주희
김한규 · 권철승 · 채현일
이광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,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·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,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,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, 직무의 정지,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제7항 및 제142조제3항제4호 신

설).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조합장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 또는 경업(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2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겸직 또는 경업 금지를 위반한 임직원의 개선(改選), 직무의 정지, 징계 또는 변상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직원 겸직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되거나 임용된 임직원에게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2조(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2조(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조합장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 또는 경업(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
제142조(중앙회의 지도) ①·② (생략)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42조(중앙회의 지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겸직 또는 경업 금지를 위반한 임직원의 개선(改選), 직무의 정지, 징계 또는 변상</u>
4. (생략)	<u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u>